E - 93 - 2011

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동현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동현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### o 제·개정경과

- 1997년 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3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9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예정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# ㅇ 관련규격

- KS B 5305 : 2008 부르동관 압력계 - KS B 5520 : 2004 격막식 압력계
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(계측장치등의 설치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93 - 2011

# 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73조(계측장 치 등의 설치)에 따라,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등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#### 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압력계측장치"란 용기, 배관 등의 화학설비에 설치되어 그 내부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탄성압력계, 액주압력계, 전기식 압력계 및 진공계 등을 말한다.
  - (나) "탄성압력계"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금속 등의 탄성변화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를 말하며, 부르동관식(Bourdon tube type), 격막식(Diaphragm seal type), 벨로우즈식(Bellows type) 및 캡슐식(Capsule type) 등이 있다.
  - (다) "액주압력계(Manometer)"란 액위차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, 유자관식 (U-tube type), 일자식, 2액식, 부자식(Float type) 및 경사관식 등이 있다.
  - (라) "전기식 압력계"란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굴곡과 변형에 의하여 전기저항이 변화함을 브릿지(Bridge)회로에서 측정하는 압력계를 말하며, 스트레인 게이 지(Strain gauge)식, 압전기식, 탄소판 저항식 등이 있다.
  - (마) "진공계"란 진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압력계를 말하며, 탄성식, 전리식(Ionization vacuum sensor), 열전도식(Thermal vacuum detector), 피스톤 등을 이용하는

E - 93 - 2011

기계적인 감압계 등이 있다.

- (바) "연성계(Compound gauge)"란 음압(Negative pressure)과 양압을 같은 계기에 서 측정할 수 있는 탄성압력계를 말한다.
- (사) "차압계"란 설비 내의 압력차이를 측정하는 탄성압력계를 말한다.
- (아) "댐퍼(Damper)"란 펌프 또는 압축기의 입출구 등과 같이 압력변화가 심한 위치에 설치된 압력계를 보호하기 위하여, 해당 압력계의 앞단에 부착하여 압력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.
- (자) "사이폰 관(Syphon tube)"이란 취급하는 유체가 증기인 경우, 압력 및 열적 변화가 심한 곳에 설치하여 유체를 응축시킴으로써 압력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차) "부르동 관(Bourdon tube)"이란 탄성이 있는 금속판을 사용하여 만든 중공(中空) 의 편평한 관을 원호형으로 구부려 끝을 밀폐한 것을 말한다.
- (카) "센티스톡(Centistoke)"이란 움직이는 유체의 점도를 나타내는 동점도(Kinematic viscosity)의 단위로서, 일반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인 ST(Stoke)의 100분의 1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압력계측장치의 특징과 선정

- (1) 탄성압력계는 일반적으로 화학설비에 많이 사용되고, 차압계는 필터 입출구의 압력 차를 측정하기 위한 곳에, 전기식 압력계는 프레스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.
- (2) 탄성압력계와 차압계의 특징은 응답속도가 빠르며, 전기식 압력계는 급격한 압력 변화의 측정에 유리하다. 압력계측장치의 종류별 특징 및 형태는 <표 1>과 같다.

E - 93 - 2011

<표 1> 압력계의 종류별 특징 및 형태

종류	정밀도 (%)	사용 범위	특징 및 형태		
탄성압력계	±(0.5~2)	19.61~196,078 kPa [20 mmH <sub>2</sub> O~2,000 kg/cm²]	・벨로우즈식 : 미압 ・부르동관식 : 초고압 ・응답속도가 빠름		
차압계	±(0.5~1)	$9.80 \sim 196,078 \text{ kPa}$ [10 mmH <sub>2</sub> O $\sim$ 2,000 kg/cm <sup>2</sup> ]	<ul><li>내부 구조는 탄성압력계 소자가 2</li><li>개로 구성되어 있음</li><li>특징은 탄성압력계와 같음</li></ul>		
전기식압력계	±(1~2)	98.04~14,705 kPa [1~150 kg/cm²]	· 급격한 압력변화에도 측정가능		
액주압력계	±(0.01~0.1) mm	$4.90^{\sim}19,608$ kPa $[5$ mm $H_2$ O $^{\sim}2,000$ mm $H_2$ O $]$	· 구조가 간단하고, 정확도가 높음. · 온도에 민감하고, 측정범위가 좁음.		

<sup>※</sup> 압력단위의 환산은 <별표 1>을 참조

# 5. 탄성압력계의 선정 및 설치 시 유의사항

- (1) 압력계 최대 눈금의 범위는 측정압력의 2배 이상, 또는 설계압력의 1.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.
- (2) 정변위식 펌프 등과 같이 압력변화가 심한 곳에는 댐퍼를 설치하여 보호하거나 격막식 탄성압력계를 사용한다.
- (3) 수증기 등의 유체를 측정하는 압력계에는 동파방지를 하여야 한다.
- (4) 유체의 온도가 80 °C 이상인 곳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이폰 관을 사용하여 부르 동 관에 80 °C 이상의 유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.
- (5) 기계적 진동이 심한 곳에는 도압관을 이용하여 진동이 없는 곳에 압력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## E - 93 - 2011

- (6) 측정유체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벤트관를 설치하고, 캡(Cap) 또는 플러그(Plug)를 체결한다.
- (7) 펌프의 흡입구처럼 음압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연성계를 설치한다.
- (8) 다음의 유체를 사용하는 곳에는 탄성압력계 중 격막식 압력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가) 유체의 점도가 10센티스톡(cSt) 이상인 유체
- (나) 부식이 심한 유체
- (다) 금속 등의 불순물이 많은 유체
- (라) 독성이 있는 유체
- (9) 탄성압력계에 사용되는 부르동 관 재질의 선정기준은 <표 2>와 같다.

<표 2> 부르동 관 재질의 선정기준

압력	재질	적용		
4901.95 kPa	· 황동, 인청동	·물, 공기 등의 유틸리티		
[50 kg/c㎡] 미만	· 스테인리스(304, 316)	·화학설비		
1960.78 ~	・니켈크롬강(Ni-Cr)	· 고온의 공정		
24509.75 kPa	・스테인리스(304, 316)	· 화학설비		
[20~250 kg/cm²]	・모넬(Monel)	· 염소나 부식이 심한 공정		
19607.80 kPa [200 kg/c㎡] 이상	・니켈크롬강(Ni-Cr) ・인코로이(Incoloy) ・스테인리스(304, 316)	・화학설비 및 압축용기 ・고온・고압공정		

※ 압력단위의 환산은 <별표 1>을 참조

# 6. 액주압력계의 설치 시 유의사항

E - 93 - 2011

- (1) 액주압력계 내부에 주입되는 액체는 점도가 낮아야 하고, 동결되지 않는 것이어야한다.
- (2) 압력계에 사용되는 관은 유입된 액체에 의하여 침투되거나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(3) 액주압력계 내부에는 외부로부터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미압 측정을 위해서는 경사관식 액주압력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 7. 그 밖의 사항

- (1) 압력계 연결부위의 나사크기는 배관과 일치하여야 한다.
- (2) 격막식 압력계는 동파방지를 위한 증기보온설비(Steam tracing)를 설치한 경우, 밀봉유(Seal oil) 등이 증발 및 팽창으로 가압될 수 있으므로 압력계 몸체에 가열 되지 않도록 한다.
- (3) 드레인 포트(Drain pot)에는 증기보온설비, 그 밖의 보온조치 등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차압계는 사용상의 편이와 영점조정을 위하여 3-방향 밸브(3-way manifold valve)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다만, 유체가 다를 경우에는 3-방향 밸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E - 93 - 2011

# < 별표 1>

# 압력단위 환산표

	bar	kg/cm²	mmHg	mH <sub>2</sub> O	atm	Pa	lb/in²
1bar	1	1.017916	750.062	10.19745	0.986923	100000	14.5
1kg/cm²	0.980665	1	735.559	10.0028	0.967841	98039.2	14.22
1mHg	1.333224	1.359510	1000	13.59550	1.315789	0.133285	0.019338
1mH <sub>2</sub> O	0.098064	0.099997	73.5539	1	0.096721	9803.92	1.422
1atm	1.01325	1.033228	760	10.33256	1	101325	14.7
1Pa	0.00001	0.000010	0.007502	0.000102	0.000009	1	0.000145
1lb/in²	0.06895	0.07031	0.05171	0.7031	0.06805	9896.55	1

\*\* 참고사항 : 1 mmHg = 1 Torr, 1  $\mu$ Hg =  $10^{-3}$ mmHg